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

(제정 2013. 9. 11.)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본 세칙은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 및 연봉계약을 위한 업적평가등급 산정에 적용한다.

**제4조(업적심의)**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는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평가영역)** 업적평가영역은 산학협력, 교육활동, 연구활동 및 봉사활동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제6조(평가기준)** 재임용과 연봉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임용 기준은 아래 표를 따른다. <개정 2015.9.1.>

구 분	업적 충족량	비 고
단과대학 및 대학원	[별표 제1호] 적용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항목 적용
한국고전학연구소	연평균 150점 이상 충족	[별표 제2호] 적용
탄소인력양성사업단	〃	[별표 제3호] 적용

2. 연봉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제4호」를 적용한다. 단, 한국고전학연구소 및 탄소인력양성사업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6.22.>

3. 향후 단과대학 소속 교원이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로 연봉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을 경우 재임용 및 연봉산정에 필요한 업적평가는 해당 사업단과의 계약을 따른다.

**제7조(준용)**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에 관하여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신규,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의 표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별표 제1호]를 적용한다.

평가기간	업 적 총 족 량						비 고
2년	연구업적총족량			교육 등 기타 업적 총족량	산학협력 업적총족량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 항목 적용
	구 분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인문사회· 예술계열	
	점 수	80점 (40점)	80점 (56점)	80점 (56점)	280점	128점	
<p style="text-align: center;">※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p> <p style="text-align: center;">- 책임시수 이상 강의</p>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15.9.1., 2016.7.19., 2018.9.1.>

### 업적평가표(단과대학 및 대학원)

평가기간	업적충족량					비고	
조교수 (2년)  부교수 (4년)	1. 재계약을 위한 항목별 평가 기준 및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따름 2. 재계약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연구업적 및 산학협력업적, 교육 등 기타업적 충족량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 항목 적용	
	구분		연구업적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인문사회· 예술계열		이공 계열
	점수	조교수 (2년)	80점	240점	128점		192점
	부교수 (4년)	160점	480점	256점	384점		
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책임시수 충족							

[별표 제2호] <개정 2014.8.25.>

### 업적평가표(한국고전학연구소)

평가영역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최대 (연간)	비고
복무 (16%)	주5일 중 4일 출근	출근일수/근무일수×40점	40	
번역참여도 (40%)	초고번역완성도	성과/목표×30점	30	
	번역스터디 참여도	참여회수/총회수×30점	30	
	번역완성율	성과/목표×40점	40	
결과보고서 주관기관 평가결과 (30%)	평가등급	통과: 75점	75	
		수정: 50점		
		재심: 25점		
		불통과: 0점		
연구 성과실적 (14%)	외부과제 실적	5천만원 이상: 15점	15	
		3천만원 이상: 10점		
		1천만원 이상: 5점		
		1천만원 이하: 0점		
	학술활동	전국규모학술지 게재 논문	20	편당 10점
합 계			250	

[별표 제3호]

업적평가표(탄소인력양성사업단)

평가영역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최대 (연간)	비 고	
학술논문 (18%)	국제전문학술지게재논문	50점	55	평가지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등재학술지 20점 등재후보학술지 15점			
학술활동 (10%)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10점 7점	30	국제학술단체 또는 G7 국가의 중앙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 한함(참가국 4개국이상 10점, 4개국미만 7점)	
	국내전국규모학술대회 발표논문	5점			
학생지도 (6%)	특성화 학과 교육과정 교과목 <sup>1</sup>	5점/학기당 1과목	10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책임시수 3학점까지 인정(운영규정)	
	강좌평가 <sup>2</sup>	10점/4.2이상	10		
취업지도 (10%)	산업체 현장실습 입장지도 <sup>3</sup>	5점/업체당	30		
	학생취업 실적 <sup>4</sup>	5점/합격자1인			
	산학연계 Capstone-Design 지도 <sup>5</sup>	15점/1건			
산학협력 (38%)	산학연계 R&D 과제 수행 <sup>6</sup>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1억원 이상	15점/1과제	15	과제책임자가 1/n로 분배
		5천만원 이상	10점/1과제		
		5천만원 이하	7점/1과제		
	산학연계 기술지도·이전 <sup>7</sup>		5점/1과제	15	
	외부자금유치 <sup>8</sup>	사업계획서	2점/1천만원당	15	계획서 작성책임자가 1/n로 분배
		선정과제	1점/간접비 10만원	30	과제수행책임자가 1/n로 분배
	위원회활동 <sup>9</sup>	외부위원회 및 자체 위 원 회 활동(위원, 팀장 등)	5점/건	10	위촉장 증빙(사업단장 이상)
	사업단활동 <sup>10</sup>	Workshop 및 세미나 등	5점/건	10	〃
	특허 및 신인 <sup>11</sup>	국제발명	20점	20	등록시 인정하되, 출원시는 50%인정함
		국내발명	10점		
사업단 성과실적 (16%)	1. 년차별 사업계획서 2. 중간결과보고서 3.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 참여기업 등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4. 우수학생유치활용 5. 참여기업 애로기술 해결 6. 산학협력체결 및 협의회 및 학회 임원 활동 7. 사업단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8. 교재개발 실적 9. 산학인력교류 지원 활동 10. 계약형학과 및 전공트랙 운영	50점	50	-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사업단장이 임명) - 사업들을 10개 항목으로 편성하여 각 항목 별 점수를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 점), 부족(2점) 매우부족(1)로 평가	
합 계			300		

1. 대학원 계약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맞춤형(특성화학과) 분야의 교육과정(1강의/학기당 1과목)을 강의한 경우 공히 학기당 5점을 인정한다.
2. 대학원 계약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맞춤형(특성화학과) 분야의 강좌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연평균 4.2이상(10점), 4.0이상(8점), 3.8이상(5점), 3.6이상(2점)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교과목의 경우는 조정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적용한다.
3. 탄소관련학과 육성사업에 의하여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산업체 현장실습의 입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1개 업체당 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4. 탄소관련학과 특성화학과(계약학과) 학생취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교수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동일학생에 대하여 복수교수의 업적인정 불가) 단, 취업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취업관련부서에서 확인한다.
5. 학위논문 지도 및 산업체와 공동으로 졸업작품을 설계·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지도교수로 활동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산학연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평가점수는 과제책임자가 1/n로 분배할 수 있다.)
7. 기술지도의 경우에는 산업체의 애로기술에 대한 지도 실적을 말하며,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전문기술)을 기업체에 전수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소정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중소단위클러스터 계획 등의 중소단위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 작성하는 경우 작성책임교수가 참여교원에게 1/n로 분배할 수 있으며, 선정과제에 대해서는 간접경비 1점/10만원 당 으로 점수를 부여하되 과제책임자가 참여교원에게 1/n로 분배할 수 있다. 단, 사업관련성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9.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지역혁신기관의 전문(자문)위원이나 산업체의 전문(자문)위원 및 기술고문, 평가위원 등의 활동은 서면·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5점/건당 을 부여한다.
10.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Workshop 및 세미나 등의 강연 및 특강, 위원위촉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되, 등록시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출원의 경우에는 해당점수의 50%를 인정한다.

[별표 제4호] <개정 2015.9.1., 2017.6.22.>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연봉산정 기준표

### 1. 평가등급 및 인상률 산정기준

가) 등급에 따른 인상률 <개정 2017.6.22.>

평가등급	S	A	B	C
인상률	1/16×(70%)	1/16×(30%)	1/16×( 0%)	1/16×(-30%)

나) 등급산정 <개정 2017.6.22.>

산학협력업적(연간)		연구업적	
		100점 이상	100점 미만
인문사회·예술계열	이공계열		
192점 이상	288점 이상	S	B
128점 이상 ~ 192점 미만	192점 이상 ~ 288점 미만	A	B
64점 이상 ~ 128점 미만	96점 이상 ~ 192점 미만	B	B
32점 이상 ~ 64점 미만	48점 이상 ~ 96점 미만	B	C
32점 미만	48점 미만	C	C

※ 연구업적 및 산학협력업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 항목을 적용한다.

※ 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등급은 교내·외 경력 합산하여 최대 33년까지만 적용한다.(교외경력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제1호] 교육경력년수 환산율표에 따름)

### 2. 연봉산정 방법

연봉계약 시 연봉산정은 전년도 기준연봉에 업적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의 인상률을 적용한 성과급을 합하여 산정한다.

$$\text{연봉} = \text{전년도 기준연봉} + \text{성과급}(\text{전년도 기준연봉} * \text{인상률})$$